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 지침

제 정 2020. 09. 28.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대한장애인배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규약 제18조 제3항 및 제0항,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이하 “원격통신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운영 조건) 협회는 내우, 외환, 중대한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의원이나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총회 참석자의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3조 (운영 방법) ① 원격통신회의에 관한 운영방법은 원칙적으로 직접 참석하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경우와 동일하다.
② 협회는 원격통신회의를 운영함에 있어 참석자의 장애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4 조 (회의의 기록) ① 원격통신회의는 기본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회의록 이외에도 전체 음성 또는 영상이 기록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된 음성 또는 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 5 조 (출석 확인) 원격통신회의의 출석은 회의 중에 음성이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체 참석자의 출석확인 서류는 협회 사무국에서 작성한다.

제 6 조 (의결 방법) ① 원격통신회의의 의결은 회의 중에 음성 또는 영상으로 참석자의 의견을 표현하여야 하며 참석자 전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협회 사무국은 의결 대상자에게 회의에 앞서 안건을 보낼 때 의결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의결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협회 사무국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 (실비보상) 원격통신에 의한 회의의 경우에도 협회는 참석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기타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0. 9. 28.)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